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 정 이 유

○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시행 과정상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고,

○ 분뇨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분뇨 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이 '93년도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있어 요금을 다소나마 현실화하여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 등의 변경 및 삭제
- 합병정화조를 삭제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변경
-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엽서 내용 변경
-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내용 삭제

○ 분뇨등 관련영업 수수료 인상 (17.4 %)

구 분	단 위		계	수수료	처리장사용료
분 뇨	당 초	18 ℓ	170	150	20
	인상(안)	**100 ℓ**	**1,108**	**997**	**111**
정화조 오 니	당 초 기본	0.75㎥	9,250	8,410	840
	초과	매 0.1㎥	1,000	890	110
	인상(안)	**100 ℓ**	**1,446**	**1,335**	**111**

○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방법을 매 익월 부과·징수토록 개선
- 분뇨처리장 사용 시마다 부과하던 것을 매월 부과·징수로 개선

○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및 포탈된 사용료의 징수 조항삭제
- 분뇨수거업자들에 징수교부금을 10% 교부하던 조항 삭제
- 상위법에 없는 포탈된 처리장 사용료에 대하여 포탈된 금액의 5배 부과하던 조항 삭제

3. 내 용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1항"을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법 제18조제2항"을 "군수는 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단독정화조·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합병정화조·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법 제18조제4항"을 "군수는 법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를 "매월 처리장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동조제4항중 "처리장사용료는"을 "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로 하고, "경우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장 사용료

(단위 : 원)

용 량	계	수수료	사용료	비 고
100ℓ	1,108	997	111	

2. 오수 및 정화조오니 청소요율

(단위 원)

용 량	계	청소요금	처리요금	비 고
100ℓ	1,446	1,335	111	

※ 수거요금중 10원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보내는사람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83-1

성 주 군 수

719-800

단독정화조내부이행통지 받는사람

· 관리번호

· 이행기한

· 발송일 귀하

☞본 통지서는 건물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정화조내부청소 안내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있는 단독정화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내부청소기한은 앞면에 표기된 기한까지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정화조내부청소 미이행시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청소요금을 지불하실 때에는 영수증을 받으시고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성주군청 환경보호과 (☎930-6184)로 문의 또는 신고하여 주십시오.
4. 청소요금 및 청소대행업체
 가. 청 소 요 금 : 100ℓ당 1,446 원
 나. 청소대행업체 :

성 주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보내는사람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83-1

성 주 군 수

719-802

단독정화조 내부 청소 이행 통지 받는사람

· 관리번호

· 이행기간

· 계고기한

☞ 본 통지서는 건물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계고장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있는 단독정화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매년(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내부청소기한은 앞면에 표기된 이행기한까지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통지하였는바,
2. 기한내 정화조 내부청소가 이행되지 않아 정화조 내부청소 계고장을 발송하니 앞면의 계고기간까지 반드시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계고기간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과태료 부과 기준

관리기준에적합하지아니할 때 (내부청소를이행하지않을 경우)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0인이하단독정화조	200	300	500
10인초과30인미만의단독정화조	300	500	700
30인이상의단독정화조	500	700	1,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분뇨의운반) ①**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한다.	제4조(분뇨의운반) ①**군수는 법제18조제1항**----------.
②**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 의무제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18조제2항**----------.
제8조(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①군수는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동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련자에게 청소이행기한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정화조등의 청소통지) ①----------**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같음)
제9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생략)	제9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현행과같음)
②**합병정화조·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오수처리시설**----------
1~2 (생략)	1~2 (현행과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 및 사용료부과·징수방법 등) ①**법 제18조제4항**에서 규정한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라 한다)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 2. (생략) ②(생략) ③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험증권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 및 사용료부과·징수방법 등) ①**군수는 법제18조제4항**---------- ---------- ---------- ---------- ---------- ---------- ---------- --. 1. ~2. (현행과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처리장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처리장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반입시 처리장의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삭제〉
④처리장사용료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④군수는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
제13조(포탈된 사용료의 징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삭제〉
제19조(과태료부과기준)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는 환경부예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별표 1】</td><td>【별표 1】</td></tr>
<tr><td>1.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장 사용료</td><td>1.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장사용료</td></tr>
<tr><td>(단위: 원)</td><td>(단위 : 원)</td></tr>
<tr><td>
<table>
<tr><th>용량</th><th>계</th><th>수수료</th><th>사용료</th><th>비고</th></tr>
<tr><td>18ℓ</td><td>170</td><td>150</td><td>20</td><td></td></tr>
</table>
</td><td>
<table>
<tr><th>용량</th><th>계</th><th>수수료</th><th>사용료</th><th>비고</th></tr>
<tr><td>100ℓ</td><td>1,108</td><td>997</td><td>111</td><td></td></tr>
</table>
</td></tr>
<tr><td></td><td></td></tr>
<tr><td>2.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 요율표
(단위 : 원)</td><td>2. 오수 및 정화조오니 청소요율
(단위 : 원)</td></tr>
<tr><td>
<table>
<tr><th>구분</th><th>용량</th><th>계</th><th>청소요금</th><th>처리요금</th><th>비고</th></tr>
<tr><td>기본</td><td>0.75㎥</td><td>9,250</td><td>8,410</td><td>840</td><td></td></tr>
<tr><td>초과</td><td>매0.1㎥</td><td>1,000</td><td>890</td><td>110</td><td></td></tr>
<tr><td colspan="6">(주)1. 요액은 수거료액임
2. 수거요금 중 10원미만은 이를 절사한다.</td></tr>
</table>
</td><td>
<table>
<tr><th>용량</th><th>계</th><th>청소요금</th><th>처리요금</th><th>비고</th></tr>
<tr><td>100ℓ</td><td>1,446</td><td>1,335</td><td>111</td><td></td></tr>
<tr><td colspan="5">※수거 요금중 10원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td></tr>
</table>
</td></tr>
</table>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우 편 엽 서 정 화 조 청 소 안 내 서 귀하 성주군 읍(면) 리 번지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안내 공문이므로 번지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성 주 군 수	우 편 엽 서 보내는사람 경북성주군성주읍경산리283-1 성 주 군 수 719-800 단독정화조내부이행통지 .관리번호, .이행기한 발송일 / 받는사람 귀하 ☞본 통지서는 건물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화 조 청 소 안 내 1. 귀하가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청소기한 : 년 월 일 나. 상기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청소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한 날로부터 1년 되는 날이 청소기한입니다. 다. 청소요금을 지불하실 때에는 영수증을 받으시고 만약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청 환경보호과(전화 933-0021)로 문의 또는 신고하여 주십시오. 2. 내부청소 미이행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청소요금 및 청소대행업자 가. 청소요금 : 기본 리터까지 나. 청소대행업자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정화조내부청소 안내**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있는 단독정화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6개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야하며, 내부청소기한은 앞면에 표기된 기한까지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정화조내부청소 미이행시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청소요금을 지불하실 때에는 영수증을 받으시고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성주군청 환경보호과(☎930-6184)로 문의 또는 신고하여 주십시오. 4. 청소요금 및 청소대행업체 가. 청소요금 : 100ℓ당 1,446 원 나. 청소대행업체 : 성 주 군 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지 제2호 서식】

우 편 엽 서

정 화 조 청 소 계 고 장
귀하

성주군 읍(면) 리 번지

이 엽서는 정화조 청소안내 공문이므로 번지내 거주자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성 주 군 수

정 화 조 청 소 계 고 장

1. 평소 군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오수및분뇨정화조, 축산폐수정화조는 1년에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년 월 일까지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통지한 바 있으나,
3.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않아 계고장을 발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청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위 기간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성주군오수·분뇨처리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과태료 부과기준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처리용량 10㎥ 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100	300	500
· 처리용량 10㎥ 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0	500	800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우 편 엽 서

보내는사람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83-1
성 주 군 수
719-802

단독정화조 내부 청소 이행 통지

. 관리번호 받는사람
. 이행기간
. 계고기한

☞본 통지서는 건물내 거주하시는 분이 수령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계고장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있는 단독정화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매년(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내부청소기한은 앞면에 표기된 이행기한까지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통지하였는바,
2. 기한내 정화조 내부청소가 이행되지 않아 정화조 내부청소 계고장을 발송하니 앞면의 계고기간까지 반드시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계고기간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4. 과태료 부과 기준

관리기준에적합하지아니할 때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0인이하단독정화조	200	300	500
10인초과30인미만의단독정화조	300	500	700
30인이상의단독정화조	500	700	1,000